

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(대안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경찰관이 접경지역에서 위험구역에 출입하는 행위 등과 비행금지 구역에서 무인자유기구를 비행시키는 행위에 대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긴급한 경우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도록 함(안 제6조의2 신설).

II. 검토의견

- 개정안의 체계 및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임.

(전문위원 박 병 섭)